

(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-참조3)

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 규정중개정규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2003. 10 . 22.

제 출 자 유철식의원등 10인

□ 제안이유

- 회의록 원고의 복사, 열람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의장은 회의록 발간전에 의원이 회의록 원고의 복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있다(안 제12조 제1항)

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 관한 규정중개정규정안

성남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의원은 회의록 발간전에” 다음에 ”의원이“를 삽입하고, ”다만, 발언자에 한하며 복사한 회의록 원고를 전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제12조(회의록원고의 복사, 열람)의장은 회의록 발간전에 회의록 원고의 복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있다. <u>다만, 발언자에 한하며 복사한 회의록 원고를 전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	제12조(회의록원고의 복사, 열람)의장은 회의록 발간전에 <u>의원이</u> 회의록 원고의 복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있다.